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,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,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(7.1~)이후,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·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 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<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>

<모임·행사>				
■ 사적모임 예외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사적모임 예외	▲ 해당 없음	▲ 동가족/동복/임종 ▲ 스포츠영업시설 ▲ 직계가족 ▲ 돌잔치 ▲ 예방접종완료자	▲ 동가족/동복/임종 ▲ 스포츠영업시설 ▲ 상견례(8인) ▲ 돌잔치(16인) ▲ 예방접종완료자	▲ 동가족/동복/임종
■ 돌잔치(전문점→'돌잔치')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돌잔치	▲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㎡당 1명	▲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4㎡당 1명	▲ 16인까지 허용	▲ 사적모임 제한에 의함
	▲ 최대 16명까지 면적기준 미적용			
■ (행사) 4단계: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				

<다중이용시설>			
다중이용시설	3단계	4단계	비고
1그룹 시설* 전체	종전과 같음	▲ 집합금지	* 유흥시설, 콜라텍·무도장, 홀담뽀 · 홀담게임장
결혼식장	▲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	▲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	3~4단계 동일 조치
장례식장	▲ 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	▲ 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	3~4단계 동일 조치
공연장 (정규공연시설 외 시설)	▲ (관객수) 6㎡당 1명 + 최대 2,000명 ▲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(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)	▲ 공연개최 금지	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
실외체육시설	▲ 샤워실 운영금지	▲ 샤워실 운영금지	-
전시회 · 박람회	▲ 부스내상주인력 최대2명 (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) ▲ 예약제 운영(의무)	▲ 부스내상주인력 최대2명 (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) ▲ 예약제 운영(의무)	-
국제회의 · 학술행사 (학술행사)	▲ 50인 미만 참석 가능 (동선 분리되는 공간별)	▲ 50인 미만 참석 가능 (인원나누기 금지)	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
이 · 미용업	종전과 같음	▲ 운영시간 제한 삭제	3그룹→기타그룹
종교시설	▲ (2단계) 전체 수용인원의 30% (두 칸 띄우기) ▲ (3단계) 전체 수용인원의 20% (네 칸 띄우기)	▲ 전체 수용인원 기준 - 100명 초과: 10%(최대 99명) - 100명 이하: 최대 10명	비대면 예배운영 관련 사항은 현행과 같음

<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>

■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 ※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

가. 적용 기간: 2021.8.9.(월) 0시 ~ 2021.8.22.(일) 24시

나. 적용 지역 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·도

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 단계

○ 수도권: 거리두기 4단계

○ 수도권 외 지역: 거리두기 3단계

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·도·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 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1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4종)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업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종교시설, 이·미용업
-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조치 내용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붙임1: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붙임2: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② 교통시설

○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조치 내용 : **방역지침 의무화**

③ 국공립시설

- 소관부처 ·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- 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- ※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 · 경마 · 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④ 모임 · 행사
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■(3단계)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 · 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
→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(4단계 금지)

■(4단계)사적모임 5명(18시~익일 05시 3명)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행사 금지

<50명 이상(3단계) 금지(4단계) 대상 모임 · 행사 예시>

법인 · 단체 · 공공기관 ·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 · 박람회, 국제회의 · 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 · 박람회, 국제회의 · 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'추가적용 수칙' 적용

■ (시험 1~4단계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4: 수도권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붙임5: 수도권 외 지역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⑤ 사회복지시설

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⑥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- 3단계: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- 4단계: 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⑦ 학교(등교)

○ 3단계/4단계: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

- 3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- 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.
- 2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3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 - 4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끝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**박혜수** 과장 전결 2021.8.9. **김재준**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915 (2021. 8. 9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